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46

발의연월일: 2024. 8. 5.

발 의 자: 송재봉·김우영·황정아

이기헌 • 박수현 • 주철현

김 현 • 박희승 • 이재관

오세희 • 이수진 • 서미화

임호선 • 전종덕 • 박홍배

임미애 • 이광희 • 김남희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월 2회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휴업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법률 제 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후단 중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를 "지정하여야 한다"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
|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② |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②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 ③ |
| •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 |
|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 | |
|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 | |
| 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u>지정하</u> | <u>지정하여야</u> |
| 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 한다. |
|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 | |
| 일로 지정할 수 있다. |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